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정 근거 마련 등〉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02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정 근거 마련 (안 제15조제1항 후단 신설)	2
2. 청년농업인 대상 스마트농업 관련 자금지원 근거 마련 (안 제20조의2 신설)	7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임종득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6. 3. 4.

다. 회 부 일 : 2026. 3.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스마트 농업은 청년층의 농업과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는 전략적·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소멸 대응과 스마트농업 정책을 연계하고, 청년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장비를 지원하거나 설비 투자자금을 융자·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0조의2).

Ⅲ. 검토의견

1.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정 근거 마련 (안 제15조제1항 후단 신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 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육성 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제15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① ----- ----- ----- ----- ----- -----,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 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육 성지구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인구감소지역¹⁾’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 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구 지역을 의미하고, 현재 기준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인구감소지역 현황 등 】

- (지정 근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의거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대상 출생률, 고령·유소년·생산가능인구 수 등 고려하여 지정
- (지정 지표) ①연평균 인구증감률, ②유소년 인구비율, ③고령화 비율, ④조출생률, ⑤청년 순이동률, ⑥인구밀도, ⑦재정자립도, ⑧주간인구
- (종합 지수) 지정 지표와 가중치를 종합 고려하여 지수 산정, 종합지수는 0과 1 사이의 값이며, 0에 가까울수록 인구감소 가능성이 크며 0.2 미만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
- (지정)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안부장관이 지정 및 고시, '21.10월 최초로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5년 단위로 재지정

시·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구(11개 시도 89개 시군구)
부산(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5개 구, 1개 일반시, 14개 도농복합시, 69개 군 등 89개 시군구

※ 자료: 농식품부 제출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2)’란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의미함.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현황 등 】

- (사업목적) 임대형 스마트팜 및 가공·유통 등 전후방산업을 집적화한「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 → 지역단위 확산 거점 마련
 - 장기 임대팜(최대 10년)을 통해 청년농의 창업자금 마련* 지원
 - * 교육(보육센터 20개월) → 재배경험 확대(단기 임대팜 3년) → 자금 마련(장기 임대팜 5+5년)
 - 지방정부가 자체조성계획을 통해 스마트 APC, 가공시설 등 연계 조성
- (사업내용) ①임대형 스마트팜 + 제도적 혜택을 모두 지원하는 '정부 지원형'과 ② 제도적 혜택만 지원하는 '지구 지정형'으로 구분
 - ① (정부 지원형) 임대형 스마트팜(부지 5ha 이상, 스마트온실 4ha 이상) + 전후방 산업 연계 조성(부지 5ha 이상, 스마트 APC, 가공시설 등)
 - 임대형 스마트팜은 정부 재정지원(200억원/개소,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기간 3년) + 전후방 산업*은 지방정부가 자체 조성계획 수립
 - * 전후방 산업 재원 조달 : 지방정부 예산, 민간투자 유치, 정부 사업 공모 등 활용
 - ② (지구 지정형) 기존 스마트팜 단지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지정, 인·허가 의제 및 공유재산법 특례 혜택* 부여 임대형 스마트팜 미지원
 - * 인·허가 의제(관련 시설 건립 간소화), 공유재산법 특례(수익계약, 장기임대, 영구시설물축조 등)
- (조성주체 및 사업기간) 시·도 및 시·군, 3년 이내
 - * 부지는 지자체 확보 원칙이나, '전후방 산업 연계지구' 부지는 사업시행 주체가 확보 가능
- (육성지구 지정 현황) '
 - '26년 기준, 총 12개소 지정(정부지원 9, 지구지정 3)
 - * ① 정부지원형 9개소 : 홍성, 남원, 장성, 거창, / ('26) 금산, 진안, 무안, 장흥, 상주
 - ② 지구지정형 3개소 : 고흥, 김제, 당진
 - ** 인구감소지역 : 도농복합시, 군

※ 자료: 농식품부 제출

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

현재 우리 농촌은 저출산·고령화³⁾와 더불어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인하여 농업 노동력 확보가 한계에 달하였고, 지역 경제의 기반마저 공동화(空洞化)되는 등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이처럼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농업 인프라를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2026년 기준 지정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개소(정부지원 9개소, 지구지정 3개소)의 육성지구 중 9개소인 75%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함.

3)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22년 49.8% → '23년 52.6% → '24년 55.8%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현황 】

□ '26년 기준, 총 12개소 지정(정부지원 9, 지구지정 3)

① 정부지원형 9개소 : 홍성, 남원, 장성, 거창, / ('26) 금산, 진안, 무안, 장흥, 상주

② 지구지정형 3개소 : 고흥, 김제, 당진

※ 음영 : 도농복합시, 군

즉, 현행 평가 체계하에서도 이미 인구감소지역이 상당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선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정안 심사 시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둘째, 육성지구 조성 사업의 규모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사업은 개소당 약 20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이 투입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서, 단순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넘어 공동육묘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 전후방 산업을 집적화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함.

따라서, 육성지구 지정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과 기반 여건, 사업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만약,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 지정할 경우 사업 추진 역량 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어 대규모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저하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청년농업인 대상 스마트농업 관련 자금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신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장비를 지원하거나 설비 투자자금을 융자·보조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의2(청년농업인에 대한 자금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장비를 지원하거나 설비 투자자금을 융자·보조할 수 있다.

현행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및 기자재를 보유한 자의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을 지원할 수 있고,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기관·단체 또는 기업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수행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나, 실제 영농 현장에서 스마트농업 시설 및 장비 등을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조항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장비 및 설비 투자자금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막대한 초기 자본이 요구되는 스마트농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농촌 지역으로의 청년층 유입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현행 법제도 하에서도 청년농업인에 대한 자금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⁴⁾에 따른 자금 지원(영농정착지원금 등)은 주로 청년농의 초기 생활 안정 및 일반적인 영농활동 보장에 치우쳐 있어, 첨단 온실 신축 및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도입 등 대규모 자본이 필수적인 스마트농업 시설 및 장비 지원의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한계가 있음.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개요 】

- (사업목적) 청년농업인 대상 창업자금 지원 및 농지·자금·교육 지원 등을 연계하여 농업분야 진출 촉진 및 농업 고령화 완화

* 국정과제(69-4): 미래 농업을 견인할 청년농업인재 양성

- (지원내용)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95%),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 ('18~'22) 월 최대 100만원 → ('23~) 월 최대 110만원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지급

* 유흥, 사치품 구매,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은 사용 제한(직불카드 발급)

< 지원기간 및 금액 >

구분	지원 1년차	지원 2년차	지원 3년차	합계
1년차	110만원(12개월)	100(12)	90(12)	3,600(36)
2년차	100만원(12개월)	90(12)	-	2,280(24)
3년차	90만원(12개월)	-	-	1,080(12)

- (사업대상)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예정자 포함) 중 소득이 일정 수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청년창업농

- (지원실적) '25년까지 총 20,587명을 선정하여 생활지원금, 농지임대, 교육, 후계농육성 자금 연계 등 종합지원 추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지원 규모	1,600	1,600	1,600	1,800	2,000	4,000	5,000	2,987	1,941
예산	12,849	21,372	31,449	33,538	38,899	55,106	95,724	113,662	112,301

* '26년부터 예산계정 지특지원 → 지특자율 이관 (자율 101,084, 지원 11,217)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둘째, 현재 정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⁵⁾ 등에 근거하여 ‘스마트팜 종합자금’ 등 청년농업인 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적 재량사항으로, 예산 당국의 기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 현황 】

□ (스마트팜 종합자금) 스마트팜 시설 설치, 개보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스마트팜 종합자금 유형별 구분 >

시설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토지매입자금(평당 100,000원 이내)
개보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 중고시설자재 구입
운영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 등

- (지원규모) '26년 1,500억원
- (지원대상) 스마트팜 설치 희망 농업인
 - * (일반) 영농교육 이수 · 농업경력 보유 및 사업 타당성 등이 입증된 농업인·농업법인
 - * (청년) 생애 최초 스마트팜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 중 관련 전공자 또는 청년 창업보육센터 이수자

□ (스마트팜ICT융복합^{시설보급}) 기존온실의 스마트시설, 현대화 시설,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사업 유형별 구분 >

ICT 장비	온실 내 온·습도 등의 최적 환경 유지를 위한 시설물(천·측창, 양액 등)에 대한 환경제어시스템 지원 및 컨설팅
시설원예현대화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관수·관비(양액시설 등), 환경관리(보광·차광, 자동개폐기 등), 기타 설비(무인방제기 등)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보온덮개, 수막시설, 열회수환기장치

- (지원규모) '26년 151억원
- (지원대상) 지자체별로 평가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농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①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보조금 지원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한편, 유사 입법례인 「농업기계화 촉진법」⁶⁾은 고가의 농업기계 구입 및 보급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별도의 명시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① 스마트농업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자금지원 관련 현행 법령상 한계와, ② 농업기계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에 청년농업인 대상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 등의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라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 및 설비 자금 등의 지원 대상을 ‘청년농업인’으로만 한정할 경우,

농촌 현장에서 오랫동안 영농에 종사하며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을 희망하거나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중장년층 등 일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정책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6)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자금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 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 촉진이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한편, 스마트농업 확산이라는 정책효과를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스마트농업 관련 자금 지원대상을 청년층 이외 일반 농업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⁷⁾

7)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